

SU-아카데미 코디네이터 운영 내규

내규 · 소관 교육혁신원 · 현행 규정

개정 2019. 2. 25. · 시행 2019. 3. 1. (현행 판)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337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전 1:36:38 · 이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시행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

제1조(목적)

본 내규는 삼육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)의 아카데미 코디네이터의 운영 내규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SU 아카데미 코디네이터(SU-Academic Coordinator)는 본 대학교 재학생들에게 학사 및 교육과정을 지도하는 전문 지도교수를 일컫는 용어로 학생들의 학사지원을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.

제3조(기능)

SU-아카데미 코디네이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. <개정 2019-02-25>

1. 학사관련 상담 및 안내
2. 교양 교육과정 지도 및 안내
3. 진로상담 및 지도, 관련 프로그램 안내
4.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지도 및 안내
5. 학생학습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지도 및 안내
6. 취·창업 지원 프로그램 지도 및 안내

제4조(구성)

- ① SU-아카데미 코디네이터는 학과(부)에 소속된 교육중심교수가 담당하며 교무처장이 임명한다.
- ② SU-아카데미 코디네이터 업무 지원은 학사지원팀이 담당한다.

제5조(업무 및 혜택)

- ① SU-아카데미 코디네이터는 제3조에 명시된 코디네이터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후 상담일지(별표 1)를 작성하여 SU-JPF(학생생활상담시스템)에 탑재한 후 원본은 학사지원팀에 제출한다.
- ② 매 학기에 진행되는 SU-아카데미 코디네이터 업무를 3시수로 인정하여 교수 책임시수에 반영하며, 업무 진행에 따른 소정의 상담비를 지급한다.

제6조(평가반영)

- ① SU-아카데미 코디네이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사후 설문(별표 2) 및 수요자 교육만족도 조사에서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평가를 반영하여 시스템 운영 개선에 활용함
- ② 코디네이터 상담 실적은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하며, 우수교원 시상제도를 마련하여 시스템 활성화를 이끈다.

제7조(관례)

본 운영 내규에 필요한 그 외의 사항은 인성교육원 및 교목처에서 정하여 총장의 승인 아래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19-02-25>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운영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일) 본 운영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별표·서식

· 아카데미코디네이터 상담일지.hwp

별표·서식 파일은 사이트에서 내려받으세요.